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은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7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21.

발 의 자 : 강은미 · 류호정 · 박찬대
배진교 · 심상정 · 양정숙
용혜인 · 윤영덕 · 윤준병
이은주 · 장혜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여야 하고,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여 작업 중 유독물질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인 노무사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업체가 이를 거부한 바 있음.

이는 현행법상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이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인바,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, 유족이 선임하는 대리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 재해당시 실제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, 그 가족 또는 유족, 근로자·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25조제4항·제6항, 제175조제5항)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근로자(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,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)에게”를 “근로자,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”로 한다.

④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그 사람을 참석시켜야 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.

1. 근로자대표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2.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(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)
3.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
4.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,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

제175조제5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의2를 다음

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5호 중 “해당 작업장 근로자”를 “해당 작업장 근로자,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 한다.

14. 제1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이 요구하였는데도 그 사람을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

14의2.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적용례) 제12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5조(작업환경측정) 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.</p>	<p>제125조(작업환경측정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구하면 그 사람을 참석시켜야 한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근로자대표(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2.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(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) 3.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 4.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, 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
<p>⑤ (생 략)</p>	<p>⑤ (현행과 같음)</p>

<p>15.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<u>해당</u> <u>작업장 근로자에게</u> 알리지 아니한 자</p> <p>16. (생략) ⑥·⑦ (생략)</p>	<p><u>지 아니한 자</u></p> <p>15. ----- -----<u>해당</u> <u>작</u> <u>업장 근로자, 같은 조 제4항제</u> <u>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</u> <u>람</u>-----</p> <p>16. (현행과 같음) ⑥·⑦ (현행과 같음)</p>
--	--